

제25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「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합니다.

2015. 9. 2.

임실군의회 의장

### 1. 개정이유

-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확화하고 중복지원을 금지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노인회에 대한 지원 규정을 명확하게 함(안 제3조)
- 나. 노인회에 대한 재산대부 및 지원절차를 명확하게 함(안 제4조)
- 다. 「임실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」 등 관련 조례 폐지에 따른 개정(안 5조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규 : 「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(협조 및 지원)
- 나. 예산조치 : 2015년도 예산에 331,483천원 반영되었음
- 다. 협의 등

- 1) 부패영향평가/규제심사: 원안동의
- 2) 성별영향평가 : 원안동의

라. 기 타

- 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
- 2) 입법예고('15. 6. 9. ~ '15. 6. 29.)결과 : 특기할 사항 없음
- 3) 비용추계서 : 붙임
- 4) 관련법령 발췌문 : 붙임

##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군수”를 “임실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1. 노인회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

제3조제5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4. 노인대학(교실) 및 경로당 관리·운영

제3조제7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6.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 등의 촉진에 관한 사항

제3조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8.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, 경로 위안 행사 등 지원

### 9. 경로당 명절 위문품 및 신문 구독 등 지원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

및 조건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노인회간의 계약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제4조 및 제5조”를 “제3조 및 제4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「임실군 보조금관리 조례」”를 “「임실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비용의 보조 등) <u>군수</u>는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<u>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·운영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4. (생략)</p> <p>5. <u>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6. (생략)</p> <p>7. <u>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</u></p>	<p>제3조(비용의 보조 등) <u>임실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<u>노인회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</u></p> <p>2. (현행 제1호와 같음)</p> <p>3. (현행 제2호와 같음)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4. <u>노인대학(교실) 및 경로당 관리·운영</u></p> <p>5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6. <u>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 등의 촉진에 관한 사항</u></p> <p>7. (현행 제6호와 같음)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

<신 설>

<신 설>

8. (생 략)

9. (생 략)

제4조(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 등) (생 략)

<신 설>

제5조(지원신청 및 정산) ① 노인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, 관리,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「임실군 보조금관리 조례」 및 「임실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8.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, 경로 위안 행사 등 지원

9. 경로당 명절 위문품 및 신문 구독 등 지원

10. (현행 제8호와 같음)

11. (현행 제9호와 같음)

제4조(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노인회간의 계약으로 한다.

제5조(지원신청 및 정산) ① -----  
--제3조 및 제4조 -----  
-----  
-----.

② -----  
----- 「임실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」 -----  
-----.

##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 운영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(비용의 보조)
- 보조금 지원 확대에 따른 비용 발생

### 2. 비용추계의 결과

#### 가. 추계의 전제

- 보조금 지원 확대에 따른 지원기준에 부합되도록 함

#### 나. 추계 결과

331,483천원/년

#### 다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원)

(단위:천

년도	지원대상	지원내용	총예산액	증감액
2015	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	-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 운영 및 사업 지원	331,483	88,340

### 3. 재원조달방안

- 2015년도 예산에 331,483천원 예산편성(추경예산 88,340천원 반영)

### 4. 작성자 : 주민복지과장 서 성 석

붙임 : 연도별 비용추계표

**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**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15년)	2차년도 (2016)	3차년도 (2017)	4차년도 (2018)	계
세 출		331,483	331,989	331,989	331,989	1,327,450
		331,483	331,989	331,989	331,989	1,327,450
<b>재원 조달</b>						
의존 재원	소 계	331,483	331,989	331,989	331,989	1,327,450
	보조금 (국도비)	16,786	16,786	16,786	16,786	67,144
	지방교부세					
	군비	314,697	315,200	315,200	315,200	1,260,297
자체 수입	소 계					
	지방세					
	세외수입					
	군비					
지방채						
기 금						
특별회계						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

##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

관리번호	2015A전북임실033		
정책명	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 지원 조례		
소관부서	기관명	전라북도 임실군	
	부서명	임실군	
	담당자명	최은심	전화번호 063-640-2102
분석평가서 제출날짜	2015년 06월 22일		
주요 분석평가 내용 (임실군)	<input type="checkbox"/> 제·개정 주요 내용 가. 노인회에 대한 지원 규정을 명확하게 함(안 제3조) 나. 노인회에 대한 재산 대부 및 지원절차를 명확하게 함(안 제4조) 다. 「임실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」 등 관련 조례 폐지에 따른 개정 (안 제5조)		
종합 검토 의견 (분석평가책임관)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원안동의 <span style="margin-left: 200px;"><input type="checkbox"/> 개선의견</span>		
	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, 성별 특성반영,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  ○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: 해당 없음		
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.  2015년 06월 22일  <b>주민복지과장</b> (담당자/연락번호 : 박경숙/063-640-2123)  주민복지과장 귀하			

## 참고

### 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#### □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(협조 및 지원)
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·지원할 수 있다.